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10 발의연월일: 2020. 8. 12.

발 의 자: 박덕흠 • 백종헌 • 김예지

김태흠 • 송언석 • 김도읍

추경호 • 이종배 • 서범수

최승재 · 김기현 · 김용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안전문화활동,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8월 들어서만 열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져 사망·실종은 42명, 시설피해 1만4091건, 이재민이 7천명에 육박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속출하고 있지만, 댐 방류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(안 6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할 수 있다"를 "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안 혂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) ① ~ ② (생 조 등의 지원) ① ~ ② (현행 략) 과 같음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해야 한다-----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 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 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다. 1. ~ 8. (생략)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 <신 설> 해에 대한 복구지원비 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 9. (생략) ④ ~ ⑦ (생 략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